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5955

제안연월일: 2024. 11. .

제 안 자 :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연 번	의안명	대표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심사경과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0254호)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2024. 6. 10.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4.8.23.)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 영폐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196호)	정부 제출	2024. 6. 2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 토론·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상정·축조심사·의결(대안반 영폐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201500호)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2024. 7. 8.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4.9.23.)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 토론 · 소위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2024.11.26.) 상정·축조심사 · 의결(대안반 영폐기)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 11. 26.)는 이상 3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음.

나. 제418회(정기회) 제17차 법제사법위원회(2024. 11. 27.)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결과를 받아들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이 각각 신설됨에 따라 도산전문법원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범위를 실효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회생법원과 접근성이 인정되는 고등법원 권역을 기준으로 회생법원에 중복관할을 허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대전회생법원의 경우 대전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충청북도에 대하여, 광주회생법원의 경우 광주고등법원 관할 소재지인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하여 중복관할을 허용하여 원칙적인 토지관할 법원 외에 대전회생법원 또는 광주회생법원에도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중복관할을 허용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서는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구인불응죄 규정을 삭제하

고, 법원의 구인명령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곳이 충청북도인 경우에는 대전회생법원에, 채무자가 거주하거나 주된 사무소 등을 둔 곳이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광주회생법원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2항 및 제13항 신설).
- 나.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구인불응죄 조항을 삭제하고(안제653조 삭제),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제660조제4항 신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2항 및 제1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 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 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564조제1항제1호 중 "제650조·제651조·제653조·제656조"를 "제650조·제651조·제656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제653조를 삭제한다.

제6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재판관할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항 및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한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부터 적용한다.
- 제3조(면책불허가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564조제1 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제564조제1항제1호 및 제5 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64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65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재판관할) ① ~ ⑪ (생	제3조(재판관할) ① ~ ⑪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
	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
	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
	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
	도 신청할 수 있다.
<u><신 설></u>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
	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
	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
	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	제564조(면책허가) ①
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	
가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u>제650조·제651조</u>	1 <u>제650조·제651</u>
<u>• 제653조 • 제656조</u> 또는 제	<u>조·제656조</u>
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생략)

② ~ ④ (생 략)

제653조(구인불응죄)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파산절차를 지연시키거나 구인의 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0조(과태료) ① ~ ③ (생략)

<신 설>

5의2.채무자가 제319조 또는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60조(과태료) ① ~ ③ (현행 과 같음)

④ 제319조, 제320조, 제322조 및 제578조의6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 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